



캐나다, 공적 치아건강지원제도(Dental benefit) 도입

장윤미 연구원

요약

캐나다는 전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치과진료에 대해서는 공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. 이에 캐나다 인구의 2/3는 치아보험을 통해 진료비용을 부담하지만 나머지 1/3은 치아보험이 없고 비용문제로 치과검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. 캐나다 정부는 2022년 12월 치아건강 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소득 기준을 포함한 일정 자격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과비용을 보전하는 정책임. 동 제도는 향후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임

- 캐나다는 연방보건법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캐나다 국민이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편적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
 - 캐나다는 1984년 제정된 연방보건법(Canada Health Act)을 통해 캐나다 국민이 재정적인 이유나 기타 장애요인에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
 - 캐나다 국민은 공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의 본인부담금만을 지불하고 있음
- 그러나 통상적인 치과진료는 공적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, 이에 캐나다 인구의 2/3는 치아보험을 통해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
 - 캐나다의 공적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입원과 외래진료 등에 보장혜택을 제공하지만, 통상적인 치과진료는 공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
 - 캐나다에서 의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은 주 정부에 있으며 주별로 건강보험의 적용범위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치과진료는 공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치과수술과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분야만 공보험이 적용됨
 - 캐나다 인구의 약 2/3는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, 직장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, 주정부에서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보험형태로 운영됨
- 캐나다 인구의 1/3은 별도의 치아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이들은 치과 방문 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치과진료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
 - 2020년 기준 캐나다 성인 인구의 약 27%는 비용 문제로 전년도 치과검진을 생략하였다고 응답함¹⁾

1) Canadian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Dentistry(2022. 6), "Environmental scan of publicly financed dental care in Canada: 2022 update", p. 10

- 2018년 기준 치아보험이 없는 캐나다인의 39.1%는 비용 문제로 치과검진을 꺼렸으며 이러한 수치는 치아보험이 있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치과방문을 꺼리는 수치(13.7%) 대비 3배 정도 높음²⁾

○ 캐나다 공적 치아건강지원제도는 현재 일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치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충족할 경우 캐나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통해 자녀의 치과진료 비용을 보전해주는 정책임

- 캐나다 정부는 연 소득이 9만 CAD(약 8,700만 원)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자녀가 치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12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치과진료에 관한 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전함
- 지원금 신청은 적격 대상자 자녀당 최대 2회에 걸쳐 가능하며 첫 번째 신청은 2022년 10월~2023년 6월간 치과진료를 받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, 두 번째 신청은 2023년 7월~2024년 6월간 치과진료를 받은 자녀를 대상으로 함
- 지원금은 가구의 연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며 1회 신청 기준 자녀당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최소 260CAD부터 최대 650CAD까지임(〈표 1〉 참조)
 - 지원금 규모는 치과비용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기준을 따르며 만일 치과비용이 지원금 최대액인 650CAD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지원금 신청이 가능함³⁾

〈표 1〉 캐나다 치아건강지원제도 소득별 지원금 규모

(단위: CAD)

소득(가구당 연 소득)	지원금(가구당 지원금)
70,000 미만	650
70,000~79,999	390
80,000~89,999	260
90,000 이상	해당 없음

주: 연 소득은 사회보장 혜택이 조정된 가구당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, 지원금은 자녀에 대한 전체 양육권(Full custody)을 가진 보호자가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함

자료: 캐나다 국세청

○ 동 제도 이용자는 현재 증가 추세에 있으며, 캐나다 정부는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으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임

- 2023년 4월 4일 기준 치아건강지원제도 신청 건수는 총 16만 개, 총 지급액은 약 1억 6천만 CAD, 지원 자녀 수는 약 26만 명에 달함
- 캐나다 정부는 2024년 6월 종료되는 치아건강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고령층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임
- 2025년경에는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누구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될 방침이며 동 제도는 궁극적으로 치아보험이 없는 전체 캐나다인의 치아건강 보장을 목표로 함

2) 캐나다 통계청(<https://www150.statcan.gc.ca/n1/pub/82-625-x/2019001/article/00010-eng.htm>)

3) 초과지원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1회와 2회로 나뉘지는 지원금 신청 기간 중 연속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신청한 내역이 없어야 하고 추가지원금 액수는 기존 지원금 금액과 동일함